

# 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 외부파트강사 모집 공고

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외부파트강사 (개인사업소득자)를 모집합니다.

2024. 1. 9.

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

## 1. 모집직종 및 인원(총 4명)

구분	모집인원	프로그램	강습일	비고
수영	1명	안전요원(오후)	- 14 ~ 22시(월~금)	
	1명	수영강사	- 19 ~ 22시(월~금)	
골프	2명	오후·저녁 골프강사	- 13 ~ 22시(월~금) * 센터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또는 지원서 허위 기재(증빙 불가 포함) 발견 시 합격 취소 조치함.
-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따라 강습시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파트타임 강사 신분: 개인사업 소득자

## 2. 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센터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강습 시작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한마음스포츠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 보수수준: 2022년 한마음스포츠센터 외부파트강사로 지급기준에 의함.
  - ※ 휴관 시 강사료 미지급(무급)

### 3. 응시자격 요건

응시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0.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통 응시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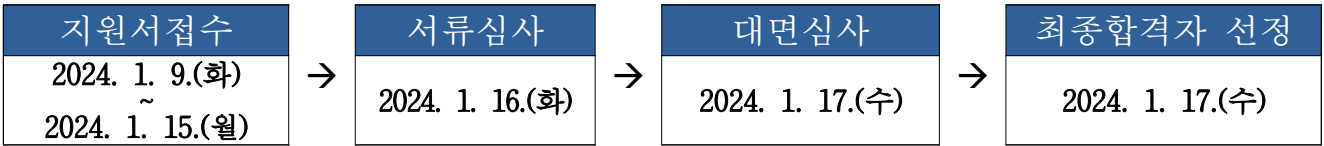
구 분	자격기준
연 령	만 18세 이상
병 역	제한없음
학 력	제한없음
성 별	제한없음
결격사항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 타	센터 운영시간 내 근무시간 변경 가능한 자

직종 응시자격

구분	자격기준	비고
수영(안전요원)	① 수영장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수영(강사)	① 수영관련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② 수영장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③ 체육관련 전공자 또는 선수출신 및 대회입상자	* 하나이상 자격충족자
골프	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② 티칭프로 자격증 소지자 및 지도경력 2년 이상	

4. 전형절차 및 방법

전형절차(블라인드 위촉)



※ 전형단계별 불합격자는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경력 및 업무적합성 등 평가

○ 심사항목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확인 및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적격 시 합격

○ 자기소개서 검증 결과 불성실 기재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 서류심사 합격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응시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

※ 위촉 후 상기사항을 포함한 위촉비리사항 확인 시 즉시 합격 취소

대면심사

○ 심사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항목: 전문지식, 의사표현력, 가치관, 친절도 등

구분	전문지식	의사표현력	가치관	친절도
100점	25점	25점	25점	25점

최종합격자 선정

○ 대면심사 심사위원별 점수 산술평균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소수점 처리규칙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절사)까지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상위자격소지자, 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지식 고득점자 합격처리

예비합격자 운영(결정)

○ 인 원: 최종합격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한 차 순위자

※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처리방식 준용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 운영 시 발표방법: 유선통보

※ 예비 합격 대상자의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3회 연락 시에도 연락 불가 시 강습 포기로 간주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응시지원서	-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공 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함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포함)	- 입사지원서 내 기재한 자격증 사본 일체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사진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경력증명서(1부)	- 지원자격요건 확인용(담당업무는 상세히 기술) - 관련 경력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조회 동의서	- 반드시 자필로 서명	1부
주민등록등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번호 전부 노출	1부
통장사본	- 급여계좌	1부

## 5. 응시지원서 접수 안내

### □ 응시지원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4. 1. 9.(화) ~ 1. 15.(월) 18:00 접수분까지
- 제출서류: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 접수방법: 방문(일·공휴일 휴관), 등기우편, 전자우편
  - 우편(등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175, 한마음스포츠센터(좌동)
  - 전자 우편: [m230126@bisco.or.kr](mailto:m230126@bisco.or.kr)
- 작성방법
  -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은 업무와 연관성 있는 내용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 자료가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6. 기타사항

- 전형단계별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잘못 작성 또는 허위사실 기재 또는 연락불능, 시험에 관한 규정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대면심사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응시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특히 경력사항),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촉단계별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위촉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 순위자를 위촉합니다.
- 모집공고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지원된 인원에서 심사·채용합니다.

- 위촉관련 인사 청탁 등 비리 또는 기타 부정합격 확인 시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촉확정 후 즉시 강습 가능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유예는 불가합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위촉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지원서류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지원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지원서류 반환청구서(붙임참조)를 작성하여 우리공단 팩스(051-709-0789) 또는 이메일 [m230126@bisco.or.kr](mailto:m230126@bisco.or.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발송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지원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위촉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참조)를 작성하여 팩스(051-709-0789) 또는 이메일 [m230126@bisco.or.kr](mailto:m230126@bisco.or.kr) 로 제출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마음스포츠센터(☎051-709-0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지원서

1. 인적사항			
응시분야	<input type="checkbox"/> 수영(안전요원, 강사) <input type="checkbox"/> 골프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최종학교소재지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 \_\_\_\_\_ (인 / 서명)

※ A4용지 1매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람.(대리작성, 허위작성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 부과)

[붙임3]

##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성명	
------	--	----	--

직업관 및 지원동기	
경험 및 경력사항	
성격(장·단점) 및 생활신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 \_\_\_\_\_ (인 / 서명)

- ※ 주의사항 : 1.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2. A4용지 2매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람.(대리작성, 허위작성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 부과)





## [붙임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붙임6]

## 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클럽 파트강사 위촉시험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 이의신청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 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